공동체는 어떻게 지역자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 영국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사례

전지훈 _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와 지역의 가치를 담은 자산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 등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영국에서 2011년 시행되어 지방정부와 공동체에 지역자산의 소유권과 지역계획활동의 권한을 부여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중요한 가치를 담은 자산들이 공동체와 주민의 노력에 의해 발견되고 보호되며 공동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권법은 공동체가 스스로 노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실제 자산을 발견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공동체 조직의 역량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집필자 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한계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례로 드라마 '응답하라1988'의 폭발적인 호응은 비단 옛 시절의 향수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던 '인간다운 따뜻함'을 느끼기 힘든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반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는 견해는 Aristotle의 견해에서부터 다양한 학문적 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에서는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을 위해서는 집단생활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맺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 서은국(2013)은 사람이라는 동물은 사회성 덕분에 놀라운 생존력을 갖게 되어서 뇌는 온통 사람생각 뿐이고 희로애락의 원천은 대부분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후 서구에서 근대 이후 자유주의 사상의 발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지만 공동체 미덕의 가치를 경시하였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활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자본의 가치가 인간관계와 호혜적 가치를 잠식하였다. 이러한 탈사회적 자유주의에 기반하여 Habermas의 견해처럼 체계에 의해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Popplin(1979)은 우리사회의 소외 및 병리현상과 같은 문제의 해결은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철저히 고립된 원자이며 타인은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이자 경쟁적 관계를 상정한다. 공동체의 논의가 현재 주목받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배려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나타나는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이윤추구가 경제활동의 목적이지만 그 조차도 타인과 사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보다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활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적 활동이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살펴보면 시장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마을단위 공동체조직이 지속가능하기란 쉽지 않다. 자본에 의해 체계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내적인 인식측면에서 공동체 참여활동은 개인의 이윤추구활동과 상충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외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경로와 형태의 자본 침투는 공동체의 가치와 활동의 본질을 흐려놓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공동체 만의 공간과 자산들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공간은 소유자의 이윤추구로 인해 사라지거나 공동체를 위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활발한 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높아져 도리어 원주민들이 나가야 하는 소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는 도시재

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허름하지만 공동체의 공간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과 건물들이 사라져간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나마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여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 조차 이윤추구를 위한 관광사업을 앞세워 상품화되는 실정이다.

과연 현재 우리사회의 도시재개발과 재생의 과정에서 자산을 지켜야 할 주민과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현재 공동체가 스스로 가치있고 소중한 공간과 자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가의 현실적, 제도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영국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살펴보는 것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자산과 공간을 공동체 스스로 활용하고 만들어 가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탄생과 구성[1)]

영국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형태보다는 의회중심의 내각 행정제도를 발전시켜온 전통이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영국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선도국가이면서도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비롯한 19세기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에 있다. 또한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19세기 초 영국의 Howard가 제시하여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전원도시 개념은 토지에 대해 공동체 경영주체에 의한 공유화를 주장하여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함께 시민사회의 제3섹터를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영국 사회는 1980년대 대처정부의 시대를 맞으며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의 자산관리 도입과 개발신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공공자산의 민간이전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정악화로 중단된 공공서비스에 대해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가 2004년 제도화 되는 등 공동체 중심의 활동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2010년 출범한 캐머룬 보수당 주도 연합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 축소하고 시민사회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하는 '큰사회(Big Socierty)'를 정책기조로 등장시킨다. 이러한 방향은 중앙정부가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동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으로 지역주의를 위한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의 아젠다는 로컬리티(Locality)라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조직의 주도아래 2011년 4월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의회통과라는 결과를 창출하게 된다.

지역주권법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및 공동체 행정 관련

1) 박수빈(2016), 전은호(2014), DCLG(2012) 참조.

권한 이양과 재정적 자치권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권법은 10개의 Part와 29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Part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지역주권법 구성 내용

Part	주 요 내 용
1	지방정부(포괄적 권한 및 거버넌스의 구성 등)
2~3	유럽연합 공공 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 등 유럽연합법 위반가능성에 대비한 재정적 제도
4	업무용 부동산 세율 조정에 관련한 기술적 문제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공동체 권한강화)
6	도시계획-개발계획 준비단계에서의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 및 협력 의무화 및 마을단위 계획 도입 등에 관한 사항
7	주택-사회주택 배분에 관한 우선순위 정립 및 지방정부 소유 주택의 재정조달 등에 관한 사항
8	런던 재개발 관련, 대런던청의 권한 및 런던시장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
9	1961년 토지보상법을 일부 개정하는 토지수용 보상에 관한 사항
10	행정적 세부 규정들에 관한 사항

지역주권법 중에서 우선 Part1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부여는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자유로운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0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에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 권한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권법의 주요한 내용은 Part5,6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동체에 지역사회 개발과 행정의 권한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공동체 권한의 내용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매각자산에 관한 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

② 공공서비스공급 및 운영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③ 커뮤니티 부동산개발권(Community Right to Build)

④ 커뮤니티 마을계획권(Neighbourhood Planning)

⑤ 유휴공공토지 활용요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

이러한 권한 중에서 본 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세가지의 권한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주요 권한[2)]

■ 매각자산에 관한 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

본 권한은 각 마을별로 주요한 공공공간(펍,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마을가게나 놀이터 등)시설이 소유주에 의해 매각될 시 조직화된 지역 공동체조직이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한은 우선 지역 비영리공동체조직들이 주요한 마을자산에 대해 지방정부의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에 등재를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역가치자산은 ACV(Asset of Community Value)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산의 활용목적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가가 핵심적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자산은 지역공동체조직들이 파악하여 지도화(MAPPING)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직들은 영국의 지역공동체위원회(Community Council)에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지방정부는 이렇게 등재된 지역의 자산목록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후 등재된 지역자산 목록 소유자가 자산을 매각할 때 본 법률 권한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등재신청한 공동체조직에 곧바로 통보한다. 이후 공동체조직은 6주 이내에 매각입찰에 응할지 여부를 지방정부에 알려야 하며 이 6주동안 소유주는 법적으로 지역자산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6주 이전에 지역 공동체조직이 자산매각에 입찰할 의사를 밝히면 매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6개월동안 공동체조직이 매각에 필요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은 거래가 정지된다. 이로부터 6개월 이후 소유주는 자산매각 입찰을 통해 공동체조직에게 매각할지, 제3자에게 매각할지 결정할 수 있게된다.

권한행사가 가능한 공동체조직의 형태는 자선단체법인, 유한회사형태의 공동체기업회사(CIC), 비영리의 보증책임유한회사, 산업공제조합 등이 해당된다. 본 권한은 2012년 9월에 발효되어 2014년 4월 기준으로 3,500명의 사람들이 활용하였다. 본 권한의 의의는 지역에서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은 비록 소유주라 할지라도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규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역사와 가치를 가진 중요한 공동체자산이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 매각되어 파괴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되어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 박수빈(2016), 박수빈 · 남진(2016), 전은호(2014), 전대욱 외(2016) 참조.

■ 공공서비스공급 및 운영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본 권한은 지역 공동체조직이 지방정부가 담당하던 공공서비스 일부를 '이해표명서'의 형식으로 위탁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며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위탁 가능하도록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권리에 의해 공동체조직은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해결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지역공동체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위탁신청을 하게 되며 지방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반드시 심의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 소방구조 등의 특수한 분야는 제외되며 지방정부는 이해표명서를 제출한 공동체 조직을 비롯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참여한 조직들에 대해 실제 위탁수행이 가능한지, 어떠한 목적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의 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표명서'를 제출한 공동체조직은 해당 정부부서에서 입찰의 절차와 실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권한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서비스에 공동체조직의 적극적 참여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효율성의 극대화 가능하다. 나아가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공동체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공공부문에서 공동체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 커뮤니티 부동산개발권(Community Right to Build)

본 권한은 주민 공동체 조직들이 지역사회의 특정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을 직접 제안하고 개발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본 권한은 공동체 이익의 목적을 위해 부동산의 개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부동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주택, 상점, 마을회관 등이 대상이 된다. 공동체조직은 이러한 대상에 제한 없이 개발형태, 규모, 건축디자인, 활용내용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개발과 공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공동체에 환원될 수 있다. 이를 테면 개발과정에서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커뮤니티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은 해당 공동체에 분배되는 방식이다.

우선 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특정 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동체 조직은 조직내 의결권 및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해당마을 거주자나 활동가들을 과반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하는 조직형태는 공동체이익회사(CIC), 자선단체법인, 산업공제조합 등 비영리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조직활동범위는 지리적, 성격상 공동체 마을의 범위에 한정한다는 내용과 증빙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지방정부는 개발 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후 공동체조직은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에 대해 전체 주민의 과반이상 동의를 얻은 과정을 거친 후 지방정부에 이를 제출하며 지방정부는 공동체가 지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부동산 개발권이 다른 공공정책 및 국가와 지방의 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동체주도의 부동산개발이 시행되면, 정부는 HCA(Home and Community Agency)가 운영하는 펀드 등을 통해 권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공동체를 지원한다(3년간 1,750만파운드 규모).

본 권한은 지역 공동체들이 공동체 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체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권한을 활용하여 마을 내 특정 토지, 건물을 지역공동체조직이 인수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 앞서 살펴본 '매각자산에 대한 공동체 우선 입찰권'이나 '공공서비스 공급과 운영에 대한 공동체 우선참여권'의 권리들과 연계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간 창출이 가능하다.

지역주권법(Localism Act)과 영국 지역재생 사례

■ 런던 Coinstreet의 공동체 활동[3)]

런던시내 워털루역 주변에 위치한 코인스트리트 공동체는 지역주권법 제정 이전에 활동하여 형성된 공동체이지만, 지역 공동체의 권리와 역할, 그리고 제도적 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지역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1970년대 민간개발업자가 코인스트리트지역에 초고층빌딩 건설을 추진하자, 지역 거주민들이 반대하며 코인스트리트 액션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저항하여 1984년 개발계획이 취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 형태로 확장된 공동체 조직은 민간주도로 공동체 재생사업을 실시하려 하였고 런던시는 관련된 민간개발업자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런던시유지를 일부 포함하여 CSCB에 1㎡당 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체조직에 매각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부지에 공동체조직은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상업시설 등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코인스트리트공동체는 근대산업유산인 OXO타워를 주택협동조합지원금, 잉글리쉬파트너쉽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매입하였고 이를 문화예술공간, 작업실, 갤러리 등 공간을 구성하여 템즈강을 조망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켰다.

3) 전지훈 외(2015), 니시야마 외(2008) 참조.

이러한 영국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재생사례는 10년의 개발반대투쟁을 포함해 40여년동안 공동체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재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의 조직적 활동과 정부 및 제도적 지원, 런던시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등의 요인들이 결합된 세계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거듭났다. 더욱이 다른 공동체들에서도 주민과 공동체의 자산화와 이를 위한 공동체 권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지역주권법이 제도화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코인스트리트공동체의 전경과 OXO타워 모습〉

■ 런던 Nunhead지역의 Ivy House Pub 보존 사례[4)]

런던의 Nunhead지역은 이민자와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지만 독특한 소규모 상점과 다양한 Pub이 들어서 있는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이후 1990년대 근방의 런던 Bankside에 테이트모던 미술관과 글로브 극장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이 지역 또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중 Ivy House Pub는 1930년대 건축양식과 지속적인 음악공연이 개최되고 유명 뮤지션들이 거쳐간 지역의 중심 Pub이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으로 활용되던 커뮤니티의 허브공간이었다.

2012년 이후 시작된 Nunhead 재생사업은 Ivy House Pub 또한 피해갈 수 없었는데, 건물 소유자였던 임대회사(Enterprise Inns)는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였지만 결국 Pub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Pub의 개발 시행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공동체 조직(Ivy House Community Pub Limited)을 구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기구인 Locality

4) 박수빈(2016), 박수빈 · 남진(2016) 참조.

와 Peckham Society 등의 도움을 얻어 「지역주권법」 중 '지역공동체의 우선입찰권'의 절차로서 지역가치자산(ACV)목록에 Pub을 2012년 10월 영국 최초로 등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인 Southwark Council은 최소한의 기간에 승인처리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보였다.

이후 6개월간의 Pub매입을 위한 자금마련의 기간동안 공동체조직(Ivy House Community Pub Limited)은 관련된 기금조달 및 자금확보에 있어서 Plunkett Foundation의 도움을 얻고 Architecture Heritage Fund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81만 파운드를 마련하여 2013년 Ivy House Pub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주민 공동체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 형태의 영국 최초 Pub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Ivy House Pub의 내 외관 모습〉

■ 지역주권법과 사례의 시사점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공동체의 공유자산 축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의 공유자산은 그 마을을 마을답게 만들고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주는 정체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지역주민들의 활동 거점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과 대화들이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지대상승으로 인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한 지역의 가치있는 공간들이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진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지역주권법은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공간과 자산들을 공동체 조직이 스스로 노력하고 지켜낼 수 있게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근거로써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지역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산과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넘겨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

만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내용은 법률적 기반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며 실제 공동체의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만들고 가꾸며 유지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과 공동체들의 인식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공적 차원보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이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내적 역량 강화와 소유권 확보를 통한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돕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활동들은 공공의 제도적 행위가 실제 빛을 발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역량있는 지역 및 시민단체들의 등장도 주요한 함의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박수빈. (2016).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영국 Localism Act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공학석사학위 논문.

박수빈 · 남진(2016).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7권 1호.

서은국. (2013). 행복의 발견. 21세기북스.

전지훈 · 최문형 · 정문기(2015). 지역의 공동체활동과 문화 및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7권 1호.

전은호. (2014). 사회적 공간구축 사례: 영국의 개발신탁(Locality). 사회주택협회자료.

전대욱 · 최인수 · 김건위(2016).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Department for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2012). A Plain English Guide to the Localism Act.

Popplin, E. (1979).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MacMillan Publishing.

니시야마 야스오 · 니시야마야에코. (2008). 김영훈 · 김기수 · 최광복 역.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만들기. 기문당.